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3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독립기념관장 추가 ..... | 3 |
| 2. 독립기념관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           | 6 |



##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9인
2. 제안일 : 2024. 8. 14.
3. 회부일 : 2024. 8. 1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은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이에 따라 전시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연구조사 기관과 인력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임명된 관장이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펴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것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음.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정부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역사를 축소·왜곡하려는 반역사적 인사를 멈춰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독립기념관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포함시키고, 관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가 관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 Ⅲ. 검토의견

#### 1.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독립기념관장 추가

-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br><br><u>&lt;신설&gt;</u> |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br><u>② 국회는 관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 |

- 대한민국헌법 및 「헌법재판소법」<sup>1)</sup>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 대한민국헌법은 탄핵의 대상자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여, 헌법 스스로 탄핵 대상자를 열거하여 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탄핵대상자를 확대할 권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sup>2)</sup>

[표 1]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 구분                                             | 대상                                                                         |
|------------------------------------------------|----------------------------------------------------------------------------|
|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br>「헌법재판소법」 제48조                |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br>②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br>③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 「검찰청법」 제37조                                    | 검사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제16조제5항 |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및 수사처 검사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

자료: 「국회법 해설」 (2024) p.627~p.628.

2)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648.

- 이에,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념관장이 합헌적이고 합법률적인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로 판단됨.
- 다만, 대한민국헌법은 탄핵소추의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독립기념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sup>3)</sup> 공무원이 아닌 독립기념관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sup>4)</sup>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장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므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독립기념관법」 제22조(「민법」의 준용) 독립기념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라 하고 있음(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 등 참조).

## 2. 독립기념관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임원의 결격사유로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br><br>1. 2. (생략)<br><u>&lt;신설&gt;</u><br><br>② ③ (생략) |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br>-----<br>-----<br>-----.<br><br>1. 2. (현행과 같음)<br>3. <u>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u><br><br>②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사후에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고 정하고 있음.<sup>5)</sup>

- 이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임명되고,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sup>6)</sup>

□ 이에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임원의 결격사유로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한다는

5) 「독립기념관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 1. 1. 시행)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인 직원 정원이 증가(50명 이상 → 300명 이상)함에 따라, 독립기념관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으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위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6) 「독립기념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기념관의 설립목적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임원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의 임원으로 임명 또는 지명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사유와 대상이 되는 신분의 실질적인 관련성도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는 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수범자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가 예견가능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정도로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의견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를 정하고 공적 영역에서 이를 판단하여 제재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 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7)</sup>

---

7)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2024. 8. 28., 김용만의원 외 169인)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동 법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역사 인식의 문제는 개인마다 다양하고, 개인의 역사관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독립기념관은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광복회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12 |